

농지취득인정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(명칭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 :)

취득하려는 농지 명세서

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㎡)	비고
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
취득목적						

「농지법」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.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. 허가증·인가증·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.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 사항	1. 주민등록표등본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. 토지(임야)대장 4. 지적도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.

